

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 제83호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6. 11. 28 .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우리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정함(안 제4조)

- 재활상담·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의료·직업·심리·사회교육·재활에 관한 사항
-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
-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
-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
-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사항

나.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천시직영 또는 위탁운영 근거 마련(안 제8조 내지 제10조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연간 백만원 소요예상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06. 10. 25 ~ 11. 13)결과, 제출된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복지관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36-17번지 일원에 둔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수탁자”라 함은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

제4조(기능)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재활상담·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의료·직업·심리·사회교육·재활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
4.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
5.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
6.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
7.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8.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사항

제5조(이용대상)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대상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. 다만, 장애인이 아닌 자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이용료) ①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기준에서 정

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와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수탁자가 개설한 각종 치료사업 및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대하여 실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운영비)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, 수탁자부담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운영) ①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.

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

③복지관의 위탁범위 및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.

제9조(기구 및 인원)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3조(별표4)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사전에 시장과 협의 구성하여야 하며,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0조(수탁의 의무)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는 신의성실, 책임감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이행하여야 한다.
2. 수탁자는 복지관이용료, 수탁자부담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
3.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4.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·임대 또는 용도전환하여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

며, 천재지변,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·망실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.

5.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, 증축, 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6.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위·수탁협약내용 및 행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7. 위탁의 취소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, 집기 등은 사천시에 무상귀속한다.

제11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

2.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

3. 수탁자가 현저히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
4.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5.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

제12조(운영규정) ①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복지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·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연간 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, 분기별 정산서는 분기말의 다음달 5일까지,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손해배상) ①복지관의 이용자는 이용기간중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(제6조관련)

구 분	기 준	이 용 료		비 고
		장애인	일반인	
강 당	1회 2시간까지	10,000원	20,000원	냉·난방 이용시 시간당 10,000원
	1회 4시간까지	20,000원	40,000원	
	1일 이용 (09:00 ~ 18:00)	25,000원	50,000원	
식 당	1회 4시간	20,000원	40,000원	
	1일 이용 (09:00 ~ 18:00)	25,000원	50,000원	
기 타	자체운영규정에 의함			

관계법령 발췌

【장애인복지법】

제2조 (장애인의 정의) ①장애인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.
2.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인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제49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 다만,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.

③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, 신고, 변경신고 및 입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장관령으로 정한다.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32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)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3과 같이 구분하고,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[별표 3]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[별표 3]

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(제32조관련)

1. 장애인생활시설

- 가.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: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·교육·직업·심리·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나. 중증장애인요양시설 :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·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다. 장애영유아생활시설 :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·교육·심리·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2.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

- 가. 장애인복지관 :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·교육·직업·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
- 나. 장애인의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다. 장애인주간보호시설 :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라. 장애인단기보호시설 :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마. 장애인공동생활가정 :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 시설

- 바. 장애인체육시설 :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
- 사. 장애인수련시설 : 장애인의 문화·취미·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·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
- 아. 장애인심부름센터 :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·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